(분류기호 및 문서번호)

○ ○ ○ ○ 검찰청

(전화번호)

수 신:		발 신:	OOO ટ	넘찰청검사장대리	
		검 사:			(1)
제 목: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					
제3항(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,「사립학교법」 제66조의3제1항,「공공기관					
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의2)에 따라 통보합니다.					
피 의 자	성 명	주민	등록번호		
	주 거				
	소속 및 직급				
사 건 번 호	년 형제	호 수시	나 개시일자		•
죄 명		신	병		
피의사실요지					
비 고	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				
	주시기 바랍니다.				